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항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에 대한 위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

항공기정비업 등록 시 정비에 필요한 장비(작업용 공구 및 계측장비 등)에 대해 임차를 허용하여 초기 사업비용 등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,

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「항공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7465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12.10. 시행)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은 타인의 재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최소한의 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8. 7 ~ 9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: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항공인력양성을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 : 임차계약을 통해 항공기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험가입	가. 항공기, 경량항공기마다 여객보험, 기체보험(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, 제3자배상책임보험, 승무원보험에 가입할 것 나.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)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,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.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는 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.
---------	--

별표 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보험(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)	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10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보험(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)	1) 항공기, 경량항공기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,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. 2)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)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,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	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. 다만, 초경량비행장치(기구류 제외)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3) 2)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는 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되, 가입금액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
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8, 별표 9,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기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)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공기정비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.	제11조(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: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</u>	4. <u>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·운영: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
<신설>	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항공인력양성을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.</u>
<신설>	③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31